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 9. 19(금) 10:00

심사결과보고 < 조 례 안 >

| | |
|----------------------------------|----|
|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 |
|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
| 3. 거창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 6 |
|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
|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2 |
| 6.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 14 |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9. 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9. 8

다. 의안번호 : 제 2003 - 37호

라. 상정일자 : 2003. 9. 19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가. 제안이유

- 조직의 미래 지향적 행정 환경에 대응성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기능쇠퇴,보강분야에 대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불합리한 보건진료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주변환경의 여건변화로 일부 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실.과 통·폐합 및 설치 : 12실과단 ⇒ 12실과

- 통·폐합 : 산림과와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 ⇒환경녹지과
- 설 치 : 도시환경과의 도시분야⇒지역개발과

□ 실과 사업소 명칭변경

- 문화공보실 ⇒ 문화관광과
- 자치행정과 ⇒ 행정과
- 산업과 ⇒ 농정과
- 지역경제과 ⇒ 경제과
- 주민자치지원단 ⇒ 자치지원과
- 문화복지센터 ⇒ 문화센터
-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 농업지원과
- 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 신설로 인한 업무 분장

- 자치행정과 - 대외협력업무
- 미래산업 업무
- 지역개발과 -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 골프장개발업무

□ 업무이관

- 종합민원실 120기동대 업무 ⇒ 자치지원과
-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 거창사건담당 업무 ⇒ 자치지원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 도시환경과 관광온천담당 업무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업무 ⇒ 보건소

□ 사업소 신설 :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

- 가조면 대학동 보건진료소 ⇒ 가조면 도리 보건진료소
- 주상면 거기1구 보건진료소 ⇒ 주상면 거기 보건진료소
- 고제면 개명1구 보건진료소 ⇒ 고제면 개명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재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동수)

- 본 조례개정안은 거창군 기구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형식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 군의회와의 협의내용 반영여부
 - 2003. 6. 9 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례회의 석상에서 「거창군 기구 개편 (최종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음
 - 실과 통·폐합에 따른 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
 - 환경녹지과 ⇒ 산림환경과 또는 산림녹지과
 - 관광온천업무 : 문화관광과 ⇒ 지역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연구소(원)
 - 문화센터 ⇒ 문화회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직제를 삭제하고, 거창사건담당업무를 행정과에 두도록 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필요없는 부분이므로 삭제하고,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조직의 미래 지향적 행정 환경에 대응성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기능쇠퇴,보강분야에 대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보건진료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주변환경의 여건 변화로 일부 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 김정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직제를 삭제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면서 환경녹지과의 주무담당을 산림 분야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9.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9. 8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38호
- 라. 상정일자 : 2003. 9. 19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가. 제안이유

- 표준정원제 실시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와 신규행정 수요 증가분야에 대하여 인력을 증원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안 제2조) - 총계 : 607명 ⇒ 38명(증)
 - 집행기관의 정원 : 555명 ⇒ 593명(증 38)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동수)

- 본 조례개정안은 거창군 기구개편 및 표준정원제에 따라 인력을 정원 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형식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가. 5급 증원에 대한 상부기관의 승인여부

- 총 38명중 5급 증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 사항임
- 승인을 받아 조례개정 요구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직급별 증원내역

- 5급 : 1명, ○ 6급 : 5명, ○ 7급 : 14명, ○ 8급 : 9명, ○ 9급 : 4명, ○ 기능직 : 5명

나. 보건진료소 결원 충원

- 군의회에서 보건진료소 결원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청한 인력이 금번 38명의 증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 집행기관의 정원 593명을 592명으로 1명 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표준정원제 실시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와 신규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하여 인력을 집행기관은 555명을 59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총 60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 김정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집행부의 인원 1명을 감하여 606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9.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9. 8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39호
- 라. 상정일자 : 2003. 9. 18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가. 제안이유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 관련 업무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 2003. 6. 23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안본칙)
- 2003. 8. 3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동수)

-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 재 생 략

5. 토론요지 : 기 재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9.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9. 8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40호
- 라. 상정일자 : 2003. 9. 19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안수상)

가. 제안이유

-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을 이행한 도축장 경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축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 (농림부 및 경남도 권고사항)
- 징세비에 미달되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징세비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세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함(안 제21조).
 - 3,000원 ⇒ 5,000원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함(안 제99조).
 -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2004.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함 (안 부칙제2항).
 - 1,000분의 10 ⇒ 1,000분의 5
-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 2신설).
 -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함(안 제1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도 함께 부과고지 함 (안 제2항).
 - 세무서장은 소득세할을 신고 또는 부과고지시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 함(안 제3항).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함 (안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63조).
 - 제조담배 ⇒ 담배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안제29조제1항제1호다목)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동수)

-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인상,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 연장, 도축세율의 한시적 인하,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제 및 형식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음 사항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

가.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인상(제21조)

-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0원임
- 징세비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며, 도내 타 시군에서도 4,000원으로 인상한 자치단체가 있으나 5,000원으로 인상한 곳은 없음

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제23조의 2)

- 지방세법 제177조의4 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주민세도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23조의2 중 제2항 내지 제4항은 납세의무자와 무관하고 세무서장이 해야할 역할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음 ⇒ 제2항 내지 제4항을 둘 필요가 있는것인지 검토가 필요
(삭제할 경우 조례명을 수정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변경)

다. 도축세 감면(부칙 제2항)

- 도축세는 소,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지방세법상 도축세는 “도살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1항에 의거 도축세를 징수해 주는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됨
-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시설을 이행한 도축장 경영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축세를 인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2001-42호) 제16조에 의거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자금이나 축산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시설 설치시 지원 사항은 : 상사업비 1억원 (2001년도)

⇒ 특정업체를 위해 경감조치함으로 인해 도축 경영자가 직접 도축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에도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 지와 또한, 2004년 9월 30일까지 시한을 정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5,000원으로 인상,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 연장,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도 함께 부과고지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는 조항 신설, 돼지 도축세율을 1000분의 5로 한시적 인하,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9. 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9. 8

다. 의안번호 : 제 2003 - 41호

라. 상정일자 : 2003. 9. 19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안수상)

가. 제안이유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자와 월남전(64.7.18~73.3.23)과 국내전방복무(67.10.9~70.7.31)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안제2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동수)

-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과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 재 생 략

5. 토론요지 : 기 재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9.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9. 8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42호
- 라. 상정일자 : 2003. 9. 19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안수상)

가. 제안이유

- 현행 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는 군 세입금중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실제 지급시 규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시 체납연도별, 체납액사유별로 차등지급하지 않고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데 대해 지적한 바 있어, 이를 반영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부정 또는 착오지급시 환수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급대상 개정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합동징수시 타부서근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을 한 자에 대해서는 1건당 30만원~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2조)

- 지급기준 개정 :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연도별로 차등지급
⇒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3,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은 100분의 5로 지급토록 개정함. (안 제3조)
-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 시효 소멸 잔여기간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 차등지급함 (안 제4조 신설)
- 지급한도액 신설 :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제3조(지급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차등지급하되,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함 (안 제5조)
- 지급방법 개정 : 포상금 수령자가 금융기관(체신관서)에 개설한 수령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토록 개정함 (안 제9조)
-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규정 신설함(안 제10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동수)

- 본 조례개정안은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을 종전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5에서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연도별 차등 지급하면서 지급 한도액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 포상금 지급액이 현행 지급액보다 약 80~100%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나 징수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조례의 체제, 형식,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을 종전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규정된 내용을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면서 지급한도액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징수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